

변경대비표(일반 및 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변경 사항	결산	변동성
1	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장기주택마련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1), 7)	-	-
2	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2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), 5), 7)	○	○
3	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4), 5), 7)	○	○
4	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4), 5), 7)	○	○
5	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50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4), 5), 7)	○	○
6	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투자신탁	7)	○	-
7	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(국공채)	7)	○	-
8	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5호(주식)	4), 5), 6), 7)	○	○
9	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투자회사(채권혼합)	4), 7)	○	○
10	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11호	4), 7)	○	-
11	미래에셋미국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4), 5), 6), 7)	○	○
12	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	4), 5), 7)	○	○
13	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투자신탁(재간접형)	7)	○	-
14	미래에셋상생플러스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7)	○	-
15	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7)	○	-
16	미래에셋솔로몬성장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4), 5), 6), 7)	○	○
17	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4), 5), 7)	○	○
18	미래에셋아내사랑글로벌이머징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1), 7)	-	-
19	미래에셋엠브렐러증권투자신탁(채권)	4), 5), 6), 7)	○	○
20	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증권투자신탁G1호(주식)	4), 5), 7)	○	○
21	미래에셋월지급식배당과인컴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(분배형)	4), 5), 7)	○	○
22	미래에셋인도채권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	4), 7)	○	○
23	미래에셋자산배분TDF2025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- 재간접형)	7)	○	○
24	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5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- 재간접형)	7)	○	○
25	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5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- 재간접형)	7)	○	○
26	미래에셋지속가능ESG채권증권투자신탁(채권)	4), 5), 7)	○	-
27	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7)	○	-
28	미래에셋참신한리밸런싱연금저축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- 재간접형)	4), 5), 6), 7)	○	○
29	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4), 7)	○	○
30	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로스4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), 7)	○	○
31	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헬스케어4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), 7)	○	○

2. 변경 사항:

- 1) 환매수수료 삭제
- 2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3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변경사항 반영
- 4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- 5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- 6) 법 개정사항 반영
- 7)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2년 6월 17일 (금)

4. 변경 내용:

- 1) 환매수수료 삭제

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
[집합투자계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9조(환매수수료)	<p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4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종류A 수익증권 30일미만: 이익금의 10%</p> <p>2. 종류C1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3. 종류C2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4. 종류C3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5. 종류C4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6. 종류C5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	<p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----	------	------

<환매수수료>	<u>[A] 30 일미만: 이익금의 10%</u> <u>[C1, C2, C3, C4, C5] 90 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	환매수수료 없음
---------	---	----------

미래에셋아내사랑글로벌이머징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

[집합투자계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9조(환매수수료)	<p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4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종류A 수익증권 30일미만: 이익금의 10% 2. 종류A-e 수익증권 30일미만: 이익금의 10% 3. 종류C1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 4. 종류C2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 5. 종류C3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 6. 종류C4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 7. 종류C5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 8. 종류C-e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 	<p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<u>A, A-e] 30 일미만: 이익금의 10%</u> <u>[C1, C2, C3, C4, C5, C-e] 90 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	환매수수료 없음

3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변경사항 반영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 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2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5.39</u>	<u>5.06</u>
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1	1	<u>29.64</u>	<u>27.95</u>
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2	2	<u>18.71</u>	<u>18.63</u>
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50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5	5	<u>4.6</u>	<u>4.26</u>
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5호(주식)	2	2	<u>23.72</u>	<u>23.58</u>
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투자회사(채권혼합)	4	4	<u>6.5</u>	<u>6.52</u>
미래에셋미국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2.22</u>	<u>21.2</u>
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	2	2	<u>18.68</u>	<u>18.63</u>
미래에셋솔로몬성장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4.31</u>	<u>23.97</u>
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5	5	<u>4.66</u>	<u>4.33</u>
미래에셋엠브렐러증권투자신탁(채권)	5	5	<u>3.45</u>	<u>4.03</u>
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증권투자신탁G1호(주식)	2	2	<u>19.18</u>	<u>18.93</u>
미래에셋월지급식배당과인컴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(분배형)	4	4	<u>9.54</u>	<u>9.57</u>
미래에셋인도채권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	4	4	<u>7.55</u>	<u>7.3</u>
미래에셋자산배분TDF2025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- 재간접형)	3	3	<u>10.26</u>	<u>10.2</u>
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5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	2	2	<u>15.78</u>	<u>15.35</u>
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5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- 재간접형)	2	2	<u>17.61</u>	<u>17.12</u>
미래에셋참신한리밸런싱연금저축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4	4	<u>7.11</u>	<u>7.38</u>
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1	1	<u>29.9</u>	<u>27.97</u>
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로스4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7.73</u>	<u>8.1</u>
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헬스케어4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7.91</u>	<u>7.95</u>

4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12. 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(1) 평가방법	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	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(해외상장 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)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

	<p>등이 발표하는 가격</p> <p>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<u>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.</u>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</p>	<p>등이 발표하는 가격(<u>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</u>)</p> <p>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(<u>외국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</u>)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(<u>해외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</u>)</p>
--	---	---

5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(용어의 정의)	<신설>	-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제55조(고난도금융투자상품)	<신설>	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<신설>	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해당사항 없음

6) 법 개정사항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8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	②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제17조제8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 3개월까지(<u>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</u>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	②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제17조제8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 3개월까지(<u>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</u>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
제42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<p>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②~③ <생략></p> <p><신설>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②~③ <생략></p> <p>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8. 가. 투자대상	<p>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</p> <p>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</p>	<삭제>
제2부 8. 나. 투자제한	<p>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</u> <u>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, <생략></p>	<p>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삭제></p>

7)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부. 4.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	회사명: <u>미래에셋펀드서비스(주)</u>	회사명: <u>한국펀드파트너스(주)</u>

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계약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